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수당 차등지급 등 》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81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49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1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5

I.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38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4.

(3) 회 부 일 : 2025. 2.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2.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74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10.
- (3) 회 부 일 : 2025. 3.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정마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3.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91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7.

(3) 회 부 일 : 2025. 6. 18.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과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 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 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안 제4조 등)

□ 3건의 개정안은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액을 출생순위(남인순의원안) 또는 자녀의 수(강선우의원안)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아동 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려는(서영교의원안) 것임.

현 행	남인순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제4조(아동수당 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 은 8세 미만 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을 지급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4조(아동수당 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18세----- ----- ----다음 각 호에 따른 금 액-----. 이 경우 자녀 의 인정 범위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첫째 자녀인 아동: 10만원	제4조(아동수당 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18세---- ----- ----- -----.	제4조(아동수당 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18세---- ----- -----20만원 -----.

<u><신 설></u>	<u>2. 둘째 자녀인</u>		
	<u>아동: 15만원</u>		
<u><신 설></u>	<u>3. 셋째 자녀</u>		
	<u>인 아동 등</u>		
	<u>제1호 및 제2</u>		
	<u>호 외의 아동:</u>		
	<u>20만원</u>		
② ~ ④ (생	② ~ ④ (현	② ~ ④ (현	② ~ ④ (현
략)	행과 같음)	행과 같음)	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에도	
		<u>불구하고 18</u>	
		<u>세 미만의 자</u>	
		<u>녀가 2명 이</u>	
		<u>상인 가정의</u>	
		<u>아 동 에 게 는</u>	
		<u>최대 10만원</u>	
		<u>을 매월 추가</u>	
		<u>로 지급한다.</u>	
		<u>이 경우 추가</u>	
		<u>지급액은 자</u>	
		<u>녀의 수를 고</u>	
		<u>려하여 대통</u>	
		<u>령령으로 정</u>	
		<u>한다.</u>	
		⑥ 제1항 및	⑤ 2세-----
		<u>제5항-----</u>	-----
		-----	-----
⑤ 제1항에도	⑤ (현행과		
불구하고 2세	같음)		
미만의 아동			

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
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
한다.

<신 설>

-----.

-----.

⑥ 주소지가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인
아동에게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항 및 제5
항에 따른 금
액에 추가로
지급한다.

1. 0세 이상
8세 미만의
아동: 10만원
2. 8세 이상
18세 미만

[illegible]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18세-----

-----.

② _____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18세-----

-----.

② _____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18세-----

② _____

특별자치도지	-----	-----	-----
사·시장·군	-----	-----	-----
수·구청장은	-----	-----	-----
제1항에 따른	-----	-----	-----
아동수당 관	-----	-----	-----
련 정보의	-----	-----	-----
제공을 위하	-----	-----	-----
여 필요한 경	-----	-----	-----
우 <u>8세</u> 미만	--- <u>18세</u> ---	--- <u>18세</u> ---	--- <u>18세</u> ---
아동과 그 보	-----	-----	-----
호자에 대한	-----	-----	-----
제7조제2항제	-----	-----	-----
2호 및 같은	-----	-----	-----
항 제5호에	-----	-----	-----
해당하는 자	-----	-----	-----
료 또는 정보	-----	-----	-----
의 제공을 관	-----	-----	-----
계 기관의 장	-----	-----	-----
에게 요청할	-----	-----	-----
수 있다. 이	-----.	-----.	-----.
경우 관계 기	-----	-----	-----
관의 장은 특	-----	-----	-----
별한 사유가	-----	-----	-----
없으면 그 요	-----	-----	-----
청에 따라야	-----	-----	-----
한다.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③·④ (현행	③·④ (현행

	같음)	과 같음)	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략)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⑤ ----- ----- ----- ----- <u>-18세-</u> ----- ----- ----- ----- ----- ----- ----- ----- ----- ----- ----- ----- ----- ----- ----- -----	⑤ ----- ----- ----- ----- <u>-18세-</u> ----- ----- ----- ----- ----- ----- ----- ----- ----- ----- ----- ----- ----- ----- ----- ----- ----- -----	⑤ ----- ----- ----- ----- <u>-18세-</u> ----- ----- ----- ----- ----- ----- ----- ----- ----- ----- ----- ----- ----- ----- ----- ----- -----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

기 및 방법 등) 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

기 및 방법
등) ① -----

-----18세-----

-----.

기 및 방법
등) ① -----

-----18세-----

.

[illegible]

호의 아동양	-----	-----	-----
육 시설이 나	-----	-----	-----
같은 항 제4	-----	-----	-----
호의 공동생	-----	-----	-----
활 가정에서	-----	-----	-----
보호조치되고	-----	-----	-----
있는 경우 등	-----	-----	-----
보건복지부장	-----	-----	-----
관이 정하는	-----	-----	-----
경우에는 아	-----	-----	-----
동수당의 전	-----	-----	-----
부 또는 일부	-----	-----	-----
를 같은 법	-----	-----	-----
제42조의 자	-----	-----	-----
산형성지원사	-----	-----	-----
업에 따라 개	-----	-----	-----
설된 수급아	-----	-----	-----
동 명의의 계	-----	-----	-----
좌에 입금하	-----	-----	-----
여 지급할 수	-----.	-----.	---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	② (현행과 같	② (현행과 같
	음)	음)	음)
③ 제4조제1	③ (현행과 같	③ 제4조제1항	③ -----
항에 따른 아	음)	및 제5항----	-----
동수당은 현		-----	-----
금으로 지급		-----	-----

④ 제4조제5
항에 따른 아
동수당은 현
금으로 지급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

④ 제4조제6
항-----

④ (현행과
같음)

아 보 육 법」 제34조의3의 보 육 서 비 스 이용권 또는 「아 이 돌 보 지원법」 제21 조의 아이돌 봄서비스 이 용 권 으 로 도 지급할 수 있 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	---------------	---------------

2. 주요 검토 사항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는 소득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경과 >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 아동(2019.9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 → 보편지급) (2018.12)
- 개정된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
-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총액 기준 예산액을 보면, 2018년에는 9,64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2조 5,681억원임.

<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18년	238	7,096	9,647
2019년	247	21,627	29,657
2020년	263	22,834	30,761
2021년	247	22,195	29,516
2022년	273	24,039	31,560
2023년	250	22,564	29,831
2024년	234	21,114	27,946
2025년	215	19,588	25,681

*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도입으로 4개월분 예산 반영

* 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 ±10%

- 아울러, 정부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¹⁾를 도입하여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2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22년 <영아수당>	월평균 15.1	3,731	5,419
2023년 <부모급여>	월평균 32.3	16,214	23,622
2024년 <부모급여>	월평균 47.2	28,887	42,267

- * 자료 : 보건복지부
- *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
- * 서울 35%, 지방 65% 차등보조 ±10%

-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15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7개국이고, 17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28개국임.

< OECD 아동수당 도입 국가의 연령 구분> ('24. 12. 기준)

지급연령	국가수	국가명
8세 미만	1	한국
15세 이하	7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영국, 스위스
17세 이하	20	핀란드(16세), 헝가리(16세), 포르투갈(16세), 체코(16세) 독일,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칠레
18세 이상	3	일본(18세), 에스토니아(18세), 프랑스(19세)
합계	31	

- * ‘_’ 국가는 학생, 직업훈련 등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지원연령을 확대하는 국가
자료: 보건복지부

1)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 단계적 확대)

□ 또한,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을 보면, 스웨덴은 월 약 18만 3,900원, 독일은 월 약 39만 9,300원, 영국은 약 19.5만원 등을 지급 중임.

< OECD 주요국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 >

국 가	지 급 액	원화 환산액 (‘25.4월 환율기준)
스웨덴	월 1,250 크로나	월 183,900원
독 일	월 250 유로	월 399,300원
영 국	(첫째) 주 25.6 파운드 (둘째 이상) 주 16.95 파운드	주 48,800원 (4주: 195,300원) 주 32,300원 (4주: 129,300원)
캐나다	(6세 미만) 연 최대 6,833 달러(월 583 달러) (6~17세) 연 최대 5,903 달러(월 492 달러)	월 665,200원 월 561,300원
일 본	(0~2세) 첫째·둘째 15,000엔, 셋째이상 30,000엔	월 147,800원, 월 295,600원
	(3세~고등학생) 첫째·둘째 10,000엔, 셋째 이상 30,000엔	월 98,500원, 월 295,600원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아동 수당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아동 1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방식과 아동의 연령, 아동 수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정액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아동연령이나 아동수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로 연령이나 아동수 또는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적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구내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급액도 증가하는 구조로 다자녀가구에 지원을 더 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원수준 ('24.12.기준)>

구분	보편지원(25개국)		선별지원(6개국)
	동일 금액	금액 차등	금액 차등
31개국	9	16	6
국가	한국, 벨기에, 독일,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등	스웨덴, 핀란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등	호주,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 칠레, 체코

*단, 아일랜드의 경우 다태아에 대해서는 증액지급(쌍둥이 아동당 1.5배, 세쌍둥이 이상 2배 증액 지급)

< 출생순위 등에 따른 아동수당 차등 지급 사례 >

	국가	지급 방식
연령기준	노르웨이	- 기본수당(연령별, 감액)+추가수당(한부모가구)+추가영아수당
	덴마크	- 기본수당(연령별/거주기간별, 감액)+추가수당(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
	룩셈부르크	- 기본수당(연령별)
	체코	- 기본수당(연령별, 소득/사회보장급여 조건 만족시 금액 증가)
	폴란드	- 소득조건 적용되는 기본수당(연령별)+추가수당(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
	그리스	- 기본수당(출생순서별/소득)
출생순서 /아동수	독일	- 기본수당(출생순서별)+추가수당(한부모가족)
	라트비아	- 기본수당(아동수별)
	슬로베니아	- 기본수당(출생순서별/소득, 한부모가구 인상금액 지급)+추가수당(다자녀가구)
	아이슬란드	- 기본수당(출생순서별/소득/가구세금신고유형)+추가수당(7세미만 아동)
	에스토니아	- 기본수당(아동수별)+추가수당(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
	이탈리아	- 기본수당(아동수별/소득)+추가수당(모연령 21세 이하, 다자녀가구 등)
연령 & 출생순서 /아동수	핀란드	- 기본수당(출생순서별)+추가수당(한부모가구)
	헝가리	- 기본수당(아동수별/가구유형)+추가수당(다자녀가구)
	네덜란드	- 기본수당(연령별)+보충수당(아동수별/소득/연령)+추가수당(한부모가구)
	오스트리아	- 기본수당(연령별)+추가수당(2명이상, 아동수별)+다자녀수당(셋째부터)
	포르투갈	- 기본수당(연령별, 감액/아동수별/소득), 한부모가구는 인상금액 지급
	프랑스	- 기본수당(둘째부터 지급, 아동수별)+추가수당(다자녀가구, 한부모, 고아)

자료 :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먼저, 아동수당대상 연령 확대 등에 관련한 사항임.

□ 3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을 두어 지급하거나(남인순 의원안),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아동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고(강선우 의원안), 월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하여(서영교 의원안) 아동수당 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안별 비교 >

	남인순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지급 연령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월 지급액	첫째 : 월 10만원 둘째 : 월 15만원 셋째 이상 : 월 20만원	공통 : 월 10만원 추가수당 : 자녀 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최대 10만원)을 추가 지급	공통: 현행 월 10만원 → 월 20만원 추가수당: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추가수당 지급 (8세미만 10만원, 8~18세 미만 5만원)

□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을 보면, 지급연령의 경우 2018년 6세 미만 지급을 시작으로 2019년 7세 미만, 2022년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지급액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만원으로 동일함.

<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 >

확대 시기	2018. 9	2019. 9.	2022. 4.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 미만	7세 미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액	10만원	10만원	10만원

- 현재의 제도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아동의 기본 권리 및 복지 증진이라는 아동수당의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도 함. 또한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 >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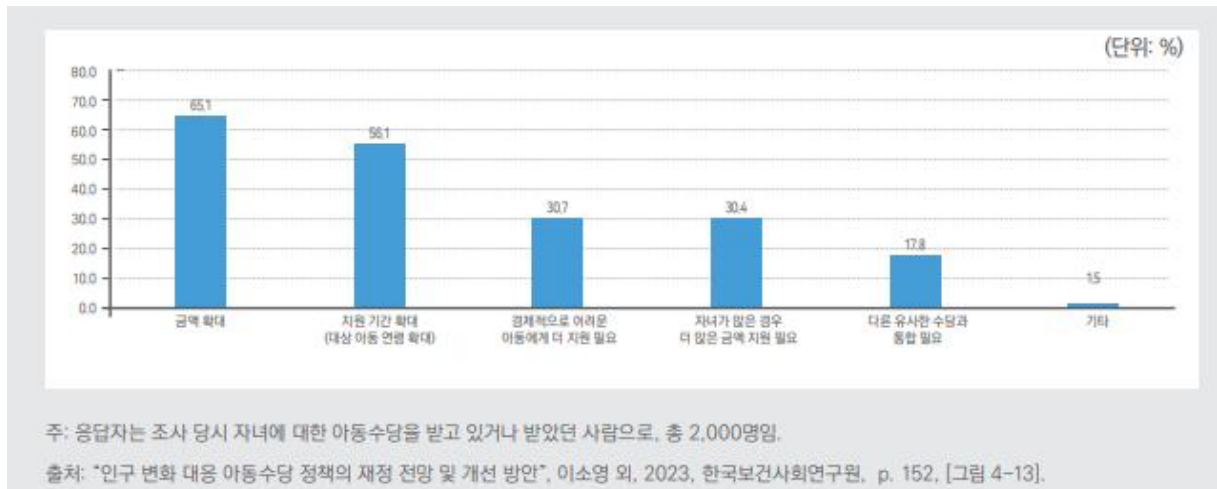
자녀 관련 지출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사교육비 포함	60.6	78.5	91.9
사교육비 제외	51.7	35.8	41.3

자료 : 보건복지부(「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p.269~p.2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18세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남인순 의원안)이나 자녀 수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도입(강선우 의원안) 또는 월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인상(서영교 의원안)하는 경우, 연령 확대에 따른 전체 아동의 복리 증진 및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외에 저출산대책으로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응답한 아동수당 개선 관련 의견(중복 응답)에서는 금액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기간 확대(대상 아동 연령 확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²⁾.

2) 이소영,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제44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5. 27.

<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



□ 그 외 아동수당 수급대상(연령)을 18세로 확대하고 다자녀 추가지원을 시행하는 경우 아동양육가구의 빈곤율은 현행 대비 약 21.4%(10.86→8.54%), 빈곤갭은 약 5.8%(29.73→28.00%) 낮아지며, 양육 부담 경감에 대한 아동수당의 기여도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현재 7.6%에서 11.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도 있음.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완화 효과>

구분	현행	대상연령 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원 시			
		8세 미만	12세 미만	15세 미만	18세 미만
가구당 평균 수금액(만원, 연간)		200.4	232.0	255.2	266.0
아동양육가구 평균 균등화소득(만원, 연간)	3,428.7	3,473.2	3,506.9	3,533.8	3,558.4
아동양육가구 빈곤율(%)	10.86	10.13	9.38	9.04	8.54
빈곤갭(%)	29.73	28.99	29.04	28.26	28.00

자료: 고재이 외,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다자녀 추가지원 시 자녀양육 부담 완화 효과(자녀 수별)>

자녀 수	구분	(A)자녀 양육비용	(B) 공통지출	(C)가구 총지출	(D)아동 수당	아동수당/양육 부담 (D/(A+B))	아동수당/가구 총지출 (D/C)
1명	1인당 10만원	412.646	2,891.269	4,655.225	100.000	3.0%	2.0%
	다자녀 추가지원 시				100.000	3.0%	2.0%
2명	1인당 10만원	714.270	3,080.679	5,244.934	200.000	5.3%	3.4%
	다자녀 추가지원 시				250.000	6.6%	4.2%
3명 이상	1인당 10만원	823.829	3,271.503	5,346.298	309.211	7.6%	5.0%
	다자녀 추가지원 시				468.422	11.4%	7.6%

자료: 고재이 외,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남인순의원안의 경우 연평균 6.4조원, 강선우의원안의 경우 연평균 4.8조원, 서영교의원안의 경우 연평균 12조 2천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재정여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각 개정안별 재정수요 추계>

남인순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연 6.4조원	연 4.8조원	연 12.2조원

- 다음, 서영교의원안의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추가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임.
- 개정안(서영교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8세 미만은 10만원, 8~18세 미만에는 5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별 차등 지원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인구감소지역³⁾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되며, 2025년 현재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다만,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OECD를 포함한 주요국 사례에서도 지역간 차등 지원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022. 6. 10. 제정)에 근거하여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외, 서영교의원안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
- 현행법은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⁴⁾ 법개정 없이도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서영교의원안)이 아동수당의 지급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한 것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아동 수당 지급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음.

4)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개념)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 제정)
 - ※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를 통해 운영 중
- (판매) ('18년) 0.4조 → ('19년) 3.2조 → ('20년) 13.3조 → ('21년) 23.6조 → ('22년) 27.2조 → ('23년) 20.9조
- (사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
 - (불법) 사행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제외 및 조례로 가맹 업종 제한 가능
- (혜택) 지자체 자율로 구매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최대10%)
- (유형) 지류, 모바일, 카드 등 3가지
- (구매한도) 1인당 월 70만원 이내

□ 한편, 우리 위원회에는 위 3건의 개정안 외에 9건의 「아동 수당법」 일부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는 바,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하겠음.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관련 개정안 비교 >

	박민규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장종태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박성준 의원안
지 급 대 상	19세 미만	19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월 지 급 액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이상	월 20만원	월 20만원	· 8세 미만: 현행 유지 · 8~18세 미만 월 20만원	월 30만원	월 30만원	월 50만원
부 모 급 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세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현행과 동일	삭제
비 고	-	물가변동률 반영	물가변동률 반영	-	-	· 8~18세 미만 수급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14세 이상 직접 신청 가능	-	-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규모 재정소요와 타 양육지원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8세 이상 아동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에 공감 - 다만, 대규모 재정소요와 타 양육지원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행정안전부	○ 아동수당은 도입 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 ('18년)만 6세 미만 → ('22년)만 8세 미만 ○ 또한, 최소보장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19년) 17.1조 →(‘24년)22.0조/ 연평균 6.5% 증가 - 추가 자원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경기도	○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아동수당 연령확대 및 금액 상향 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 초래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은 지역 간 형평성, 역차별 문제 발생 가능 - 현 아동수당법 제1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 가능하므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관련 개정의 실익 없음

문 의 처
02)6788-5496